

2021년 1월 경상남도 반사회 홍보목록

| 연번 | 홍보내용 | 담당부서 | 페이지 |
|----|-------------------------------------|---------|-----|
| 1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 안내 | 감염병관리과 | 1 |
| 2 | 설 연휴 응급의료정보(문 여는 병원·약국) 이용 안내 (신규) | 식품의약과 | 10 |
| 3 | 안전속도 5030 시행 안내 | 교통정책과 | 11 |
| 4 |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조심기간 안내 | 산림정책과 | 13 |
| 5 | 화재·붕괴·폭발 대비 재난배상책임보험 소개 | 사회재난과 | 18 |
| 6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및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안내 | 건축주택과 | 21 |
| 7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 안내 (신규) | 건축주택과 | 23 |
| 8 |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 신청 안내 (신규) | 건축주택과 | 24 |
| 9 |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신규) | 토지정보과 | 25 |
| 10 | 경상남도『주요 농산물 가격예측 시스템』이용 안내 | 친환경농업과 | 27 |
| 11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안내 (신규) | 환경정책과 | 31 |
| 12 | 미세먼지 비상 시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안내 | 기후대기과 | 37 |
| 13 |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전국 최초 시행 | 동물방역과 | 40 |
| 14 | 디지털 배움터(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안내 | 정보담당관 | 42 |
| 15 |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 건설지원과 | 43 |
| 16 | 태풍 등 풍수해 발생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촉구 | 자연재난과 | 45 |
| 17 |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안내 (신규) | 행정과 | 48 |
| 18 |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방법 등 안내 | 아동청소년과 | 50 |
| 19 | 경남도 난임 극복 지원사업 확대 지원 | 가족지원과 | 53 |
| 20 | 2021학년도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신입생모집(신규) | 통합교육추진단 | 5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행동수칙 안내

(자료제공: 복지보건국 감염병관리과 ☎ 055-211-498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 행동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 일반 국민 예방행동수칙은?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

- 항상 마스크 착용!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주위 환경을 자주 소독하고 환기하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주요 Q&A

<Q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원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A1 : 코로나19는 과거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이며, 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주로 나타나며 폐렴, 호흡곤란 등 중증 경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Q2>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A2 :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유행의 원인 바이러스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로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어떻게 전염되나요?

A3 :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숨을 내쉬거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성되는 호흡기 비말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기에 직접 닿거나, 비말이 묻은 손 또는 물건 등을 만진 뒤 눈, 코 또는 입을 만질 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와 다른 사람이 약 2m 이내로 밀접하게 접촉할 때 전파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민들의 감염 예방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Q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A4 :백신은 2021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예방 접종 시기는 외국 접종 동향, 부작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언제든지 신속한 접종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Q5> 환자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A5 : 아직 완치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Q6> 검사를 받을 대상과 장소는 어디인가요?

A6 : 의사환자(확진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사의 소견으로 코로나19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검체 채취가 가능한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Q7>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A7 : 접촉자는 확진환자의 증상,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 및 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증상발생 2일 전(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부터 접촉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접촉자가 되면,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를 실시합니다.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 연번 | 구 분 | 선별진료소 | 검체채취 | 주 소 | 연락처 | 비 고 |
|----|-----|------------|------|-----------------------|--------------|------------------|
| 1 | 창원시 | 창원보건소 | ○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2번길 9 | 055-225-4281 | |
| 2 | | 마산보건소 | ○ |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15 | 055-225-5941 | |
| 3 | | 진해보건소 | ○ |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 055-225-6101 | |
| 4 | 진주시 | 진주시보건소 | ○ | 진주시 월아산로 2026(초전동) | 055-749-5714 | 자동차 이동형 병행 운영 |
| 5 | 통영시 | 통영시보건소 | ○ | 통영시 안개4길 108(무전동) | 055-650-6055 | |
| 6 | 사천시 | 사천시보건소 | ○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1 | 055-830-3620 | |
| 7 | 김해시 | 김해시보건소 | ○ | 김해시 분성로 227(외동) | 055-330-4481 | 자동차 이동형 병행 운영 |
| 8 | 밀양시 | 밀양시보건소 | ○ | 밀양시 삼문중앙로 41(삼문동) | 055-359-7015 | |
| 9 | 거제시 | 거제시보건소 | ○ | 거제시 수양로 506(양정동) | 055-639-6000 | |
| 10 | 양산시 | 양산시보건소 | ○ | 양산시 삼량로 169(중부동) | 055-392-5220 | |
| 11 | 의령군 | 의령군보건소 | ○ |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16 | 055-570-4040 | |
| 12 | 함안군 | 함안군보건소 | ○ |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4길 10 | 055-580-3113 | |
| 13 | 창녕군 | 창녕군보건소 | ○ | 창녕군 창녕읍 우포2로 1189-35 | 055-530-6217 | |
| 14 | 고성군 | 고성군보건소 | ○ |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79번길 103-3 | 055-670-4088 | |
| 15 | 남해군 | 남해군보건소 | ○ |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 055-860-8740 | |
| 16 | 하동군 | 하동군보건소 | ○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 | 055-882-4000 | |
| - | 산청군 | (산청군보건의료원) | | | 의료기관 분류 | |
| 17 | 함양군 | 함양군보건소 | ○ |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 055-960-8040 | |
| 18 | 거창군 | 거창군보건소 | ○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079 | 055-940-8335 | |
| 19 | 합천군 | 합천군보건소 | ○ |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 055-930-3683 | |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 연번 | 시군명 | 선별진료소명 | 검체 채취 | 주 소 | 연락처 |
|----|-----|----------|----------|------------------------|--------------|
| 1 | 창원시 | 창원경상대병원 | ○ |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11 | 055-214-1000 |
| 2 | | 한마음병원 | ○ |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82번길 21 | 055-267-2000 |
| 3 | | 파티마병원 | ○ |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 055-270-1020 |
| 4 | | 삼성창원병원 | ○ |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 055-233-6121 |
| 5 | | 마산의료원 | ○ |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 055-249-1116 |
| 6 | | SMG연세병원 | ○ |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76 | 055-240-7777 |
| 7 | | 진해연세에스병원 | ○ |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32번길 13 | 055-240-7777 |
| 8 | | 진해세광병원 | ○ |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55-1 | 055-540-3700 |
| 9 | 진주시 | 경상대병원 | ○ | 진주시 진주대로 861번길 15 | 055-750-8939 |
| 10 | | 진주제일병원 | ○ | 진주시 진주대로 885 | 055-756-2900 |
| 11 | | 진주고려병원 | ○ | 진주시 진주시 동진로 2 | 055-751-2525 |
| 12 | | 진주반도병원 | ○ | 진주시 남강로 701 | 055-749-0200 |
| 13 | | 진주복음병원 | ○ | 진주시 진양호로 370 | 055-749-7119 |
| 14 | | 진주세란병원 | ○ | 진주시 진주대로 829 | 055-760-7575 |
| 15 | | 진주한일병원 | ○ | 진주시 범골로 17 | 055-750-1333 |
| 16 | 통영시 | 통영적십자병원 | ○ | 통영시 중앙로 97 | 055-644-8901 |
| 17 | 사천시 | 삼천포서울병원 | ○ | 사천시 남일로 33(동금동) | 055-830-9009 |
| 18 | | 삼천포제일병원 | ○ | 사천시 중앙로 136 | 055-830-2965 |
| 19 | 김해시 | 김해중앙병원 | ○ | 김해시 분성로 94-8 (외동) | 055-330-6007 |
| 20 | | 조은금강병원 | ○ | 김해시 장유로 167-13 (부곡동) | 055-330-0392 |
| 21 | | 갑을장유병원 | ○ | 김해시 김해대로 1814-37 (삼계동) | 055-310-6114 |
| 22 | 밀양시 | 밀양윤병원 | ○ | 밀양시 삼문중앙로 32 | 055-354-2200 |
| 23 | 거제시 | 거봉백병원 | ○ | 거제시 계룡로5길 14 | 055-733-0188 |
| 24 | | 거제대우병원 | ○ | 거제시 두모길16 | 055-680-8119 |
| 25 | | 맑은샘병원 | ○ | 거제시 연초면 거제대로 4477 | 055-736-1004 |
| 26 | 양산시 | 양산부산대병원 | ○ |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 055-360-3366 |
| 27 | | 베데스다병원 | ○ | 양산시 신기로 28 | 055-384-9901 |
| 28 | 의령군 | 의령병원 | ○ |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4길 10 | 055-573-4100 |
| 29 | 함안군 | 영동병원 | ○ | 함안군 칠원읍 용산2길 45-13 | 055-586-2000 |
| 30 | 창녕군 | 한성병원 | ○ | 창녕군 창녕읍 교리1길 2 | 055-530-5119 |
| 31 | 남해군 | 남해병원 | ○ |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69 | 055-863-2201 |
| 32 | 하동군 | 새하동병원 | ○ |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39 | 055-880-4200 |
| 33 | 산청군 | 산청군보건의료원 | ○ |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97 | 055-970-7582 |
| 34 | 함양군 | 함양성심병원 | ○ |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70 | 055-963-4322 |
| 35 | 거창군 | 거창적십자병원 | ○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91 | 055-944-3251 |

□ 자동차 이동형(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 연번 | 구 분 | 선별진료소명 | 검체 채취 | 주 소 | 운영 기간 | 비 고 |
|----|-----|--------|-------|---------------------------------------|-------|--------------|
| 1 | 진주시 | 진주보건소 | ○ | 진주시 보건소 앞 주차장 (진주시 월아산로 2026, 초전동) | 상시 | 선별진료소와 병행 운영 |
| 2 | 김해시 | 김해보건소 | ○ | 김해시 보건소 앞 주차장 (김해시 분성로 227, 외동) | 상시 | 선별진료소와 병행 운영 |

□ 임시 선별진료소(선별검사소) 운영 현황

○ 임시 선별진료소 (2개소)

| 연번 | 구분 | 선별진료소명 | 검체 채취 | 주 소 | 운영 기간 | 비 고 |
|----|-----|--------------------|-------|--------------------------|-------------------|----------------------|
| 1 | 사천시 | 사천읍보건지소 임시선별진료소 | ○ | 사천읍보건지소 (사천읍 무산로 21) | '20.12.15.~ 미정 | 평일 운영 (09~18시) |
| 2 | | 삼천포보건센터 임시선별진료소 | ○ | 삼천포보건센터 (동금로 33, 동금동) | '20.12.15.~ 미정 | 평일·주말 운영 (09~18시) |



대응지침 제9판 부록5 '일반국민 10대 수칙'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10가지

“코로나19와의 장기전, 흔들림 없이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 01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2m(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 02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 착용하기
2세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의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 03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기
- 04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 05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06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 07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소독하기
- 08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09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확인하기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10 필요하지 않는 여행 자제하기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동절기 및 연말·연시 방역수칙

- ① 연말 모임 행사는 취소 하거나 비대면 비접촉으로 전환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세요.
- ② 부득이하게 외출하게 될 경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손씻기 등 방문장소 및 동선 별로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세요.

[연말·연시 등 모임]

- 단체모임은 하지 않고 동거 가족과 시간 보내기 또는 비대면 즐길거리 찾기
- 동거하지 않는 친지, 지인과의 모임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 불가피하게 대면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식사는 최대한 자제, 대면 모임 시간 최소화하기

* 불가피한 대면 모임시 방역관리자 지정 및 참가자 명단 확보, 행사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참가자는 참석 중단 및 방역담당자에게 통보

공 통
방역수칙

-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사실은 별도 확인
-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비대면·비접촉으로 모임 행사 진행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2020.12.10.



외식할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손 위생은 꼭 지켜주세요

동절기 및 연말·연시 방역수칙

- 연말 모임 행사는 취소 하거나 비대면 비접촉으로 전환해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해 주세요.
- 부득이하게 외출하게 될 경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 주시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 손씻기 등 방문장소 및 동선 별로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세요.

[음식점·카페 등에서 식사할 때]

- 식당·카페는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대에 방문, 포장·배달 활용
- 음식섭취 외 시간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 음식을 가지러 가는 등 이동 시, 대기 시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2m 이상 거리 유지
- 지그재그 또는 한 방향으로 착석, 개별 공간에서 개인별 식사
- 음식은 개별식기에 덜어먹고 식기류, 술잔 등은 개별 사용
- 식사 시 대화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및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공 통 방역수칙

-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은 별도 확인
- 필수적인 경우가 아닌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비대면·비접촉으로 모임 행사 진행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 타인과 접촉 최소화 및 사람 많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설 연휴 응급의료정보(문 여는 병원·약국) 이용 안내

(자료제공: 복지보건국 식품의약과 ☎ 211-5053)

설 연휴 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시 비상진료기관(병원·약국) 및 운영시간 확인 방법 안내입니다.

□ 비상진료기관 운영 개요

- 설 연휴 기간 중 응급환자 발생 대비 응급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진료 가동
 - 평소와 동일하게 설 연휴기간 중 상시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응급진료체계 유지**
- 설 연휴 기간 중 지역주민의 진료 및 의약품 구입 등에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운영

□ 문 여는 병원·약국 운영(진료)시간 확인 방법 안내

- 전화문의
 -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 홈페이지 이용방법
 -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 경남도 및 사군 홈페이지 게재 예정
 - 주요포털사이트 검색어 : ‘명절 병원’, ‘명절 진료’, ‘명절 약국’
- 스마트폰 앱(App) :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보건복지부 제공)



안전속도 5030 시행 안내

(자료제공: 도시교통국 교통정책과 ☎ 211-4356)

도심부 주요 도로는 제한속도를 시속 50km/h이하로, 주택가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h이하로 속도를 낮추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입니다.

추진배경

- 소통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보행자의 보호에 미흡
-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차량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추진

※ 국토계획법 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인 ‘도심부’에 보행사고 92% 집중 발생

주요내용

- '19.4.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1.4.17.부터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 도로가 시속 50km이하로 낮아집니다.

| 현 행 | | 변 경 | |
|-------|---------------------|-------|--|
| 일반 도로 | 편도 1차로 60km/h 이내 | 일반 도로 | 도심부 50km/h 이내 (필요시 60km/h 적용) |
| | 편도 2차로 이상 80km/h 이내 | | 도심부 외 편도1차 : 60km/h 이내 편도2차 이상 : 80km/h 이내 |


- ▶ 대중교통이 통행하는 등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는 50km/h를 기본 적용
※ 소통 상 중요도로는 60km/h 적용 가능
- ▶ 주택가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 규모가 작고, 차량소통보다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에는 30km/h를 적용



안전속도 5030 슬로건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전속도

5030

함께 알아볼까요?

연령대별 안전속도 5030 정책 인지도






| 연령대 | 인지도 (%) |
|----------------|--------------|
| 20대 이하 | 59.7% |
| 30대 | 66.6% |
| 40대 | 70.2% |
| 50대 | 72.1% |
| 60대 이상 | 77.3% |
| 전 연령 평균 | 68.1% |

“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인지도는 68.1%에 불과! ”

안전속도 5030 이 무엇인가요?


보행자 안전수준의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

<도시지역 일반도로>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


제한속도 시속 10km만 줄여도?

전체 사고 건수



13.3% 감소

사망자 수



63.6% 감소

통행 시간 차이

60

시속 60km



50

시속 50km

단 2분!

*안전속도 5030 도입 전국 68개 구간 대상 시험 전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 결과경남청

우리동네 **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조심기간 안내

(자료제공: 기후환경산림국 산림정책과 ☎ 211-6833)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불조심기간을 맞이하여 산불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및 행동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 산불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경상남도에서는 건조기를 맞이하여 매년 산불조심기간(11.1~5.15.)을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위험예보에 따라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하거나,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음
 - ↳ 시·군 산림부서에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야영, 모닥불을 피우거나 흡연 금지
-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논밭 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화기 취급 금지
 - ↳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산림관서나 119, 경찰서·소방서 등에 신고
- 등산을 할 때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 야영 등 야외에서 취사를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시고 취사가 끝난 후에는 주변 불씨 단속 철저
- 입산통제구역에는 출입하지 말고 불씨가 남아있는 담뱃불 버리는 행위 절대 금지
-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 버리는 행위 금지

□ 산불관련 처벌내용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림방화죄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 과태료 20만원 이하

1.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행동요령

-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부서(055-211-6833), 소방서(지역번호+119), 경찰서(지역번호+112),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에 신고합니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 등을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가 없을 경우 **활엽수가 자라고 있는 산림지역**으로 대피합니다.
- 계곡에 물이 있더라도 **절대 계곡 밑**으로 대피하지 않습니다.
- 산불로 부터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제거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이나, 활엽수림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다.



2. 주택가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행동요령

-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지속적으로 뿌려주고,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제거합니다.
-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결·연결된 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관련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터,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혹시 대피하지 않은 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 재난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정보를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 산불 가해자를 인지하였을 경우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관서,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재난안전취약시설로 산불이 확산될 경우 행동요령

<안전취약계층>

- 종사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적극 요청(알림벨 울리기 등) 한다.
- 빠른 시간 내 종사자 또는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출구방향으로 이동하거나, 피난 안전구역으로 피난하여 구출을 기다린다.

<종사자 또는 도우미>

- 재난 방송 등 산불상황을 알리는 정보를 수시로 체크한다.
- 피난 상황 발생 시 피난방송을 실시하며, 주어진 임무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 및 임무 분장 체계를 유지한다.
- 출입구를 개방하여 출입구 근처에서 탈출에 실패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안전취약계층을 임시 대피 공간으로 이동시켜 구조 활동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대피여부를 재확인한다.

<일반국민>

- 재난안전취약시설로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119, 산림관서, 경찰서, 해당 안전취약시설에 신고한다.
- 진화차량이 취약시설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차량을 이동 주차하고, 구조·구급차가 신속히 접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여력이 되는 건장한 국민은 취약계층의 구조활동을 돕는다.

4. 산불진화 참여 행동요령

-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괘이, 칼쿠리 등)와 안전장구(안전복, 안전모, 안전화)를 갖추도록 한다.
- 산불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장한 젊은 분은 진화활동에 참여한다.
- 산불진화에 참여할 경우 현장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Q & A

Q : 산불이 계속 번져서 위험에 처했을 경우 대처요령은?

A :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번지게 되므로 바람 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장소는 불이 지나간 타버린 장소, 낮은 장소,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하고 산불보다 높은 장소를 피하고 불길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낮은 지역을 찾아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피해지역 가축관리요령

1. 화재로 소실된 축사관리

- 산불로 인해 소실된 축사의 가축은 안전한 곳으로 임시 이동시켜 관리하고, 출하시기에 임박한 가축은 조기출하 합시다.
- 축사 중 일부가 소실된 경우에는 불에 탄 자재들을 치우고 축사가 무너질 우려가 있는 곳은 임시로 지지대를 설치해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하도록 합시다.
- 파손된 축사의 전기시설을 점검해 감전이나, 누전·합선에 의한 화재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분뇨처리시설 등을 수리합시다.

2. 화재발생으로 놀란 가축관리

- 빠른 시간 내에 축사 내외를 정리 정돈해 사육환경 변화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충분히 주고 사료는 먹는 양을 봐가며 남기지 않도록 급여합시다.

- 스트레스를 받은 가축은 체력 회복을 위해 축사 내에 짚을 깔아주고 고열량사료나 부드러운 풀 사료를 소량씩 자주 급여합니다.
- 크게 놀라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거나 임신 중인 가축은 피부손질을 해줘 평온을 찾도록 도와주고, 필요시 **수의사의 처방을 받아 강심제, 간 기능 강화제, 비타민제제, 수액, 광범위항생제 등 약물을 투여해야 합니다.**
- 특히 어린 가축이나 임신 가축은 잘 보살피 주도록 합니다.
-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물에 젖은 사료나 부패한 배합사료는 가축에게 급여하지 않도록 하고, **조사료는 햇볕에 내어놓아 말린 후에 급여를 하도록 합니다.**

3. 부상가축 및 죽은 가축의 처리

- 큰 부상을 입은 가축은 신속히 수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합니다.
- 가벼운 화상이나 상처를 입은 가축은 소독 후 바셀린이나 항생제연고를 발라 상처부위가 덧나지않고 빨리 아물도록 조치합니다.
- 화재로 죽은 가축은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당국의 권고에 따라 매몰하거나 소각시켜야 합니다.

4. 방역대책

- 산불지역의 가축은 연기, **화염**, 소음 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상당기간 면역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니 방역에 힘써야 합니다.
- 외부인이나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고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와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농장별 예방접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5. 사후조치요령

- 화재발생 축사는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사용 또는 개축해야 합니다.
- 화재 또는 진화작업으로 변질된 사료는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
- 산불피해를 입은 야산은 목초를 **파종해(결 뿌림 초지 조성)** 토양 유실을 예방하고 사료자원으로 이용합니다.
- 사료작물 재배지에 대해서는, 재만 덮인 곳은 물을 뿌려 재를 털어내 주도록 하고 불에 타버린 곳은 사료용 옥수수 등 대체 사료작물을 파종해야 합니다.

화재·붕괴·폭발 대비 재난배상책임보험 소개

(자료제공: 재난안전건설본부 사회재난과 ☎ 211-2876)

화재·붕괴·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 화재·붕괴·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의무적 가입보험임.

☞ 가입시기 :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해당 가입시설의 본래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개시전까지

□ 가입대상 시설은?

○ 숙박업소,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1층 일반음식점,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발매소, 국제회의시설,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경마장, 장외발매소

☞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공제에 가입하는 시설은 제외

□ 보상내용은?

| 담보 | 가입금액 | |
|--------------------------|-----------|---|
| 대인 | 사망 | 1인당 1억5천만원 *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
| | 부상 |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3천만원)~14급(50만원) |
| | 후유장애 |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 1급(1억5천만원)~14급(1천만원) |
| *사고당 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무한) | | |
| 대물 | 1사고당 10억원 | |

□ 보험료 부담은?

○ 2만원 정도(시설면적 100㎡ 기준)이나,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음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사고를 당해도 안심할 수 있어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개정에 따라 '17. 1. 8.부터 시행중인 보험으로, 음식점의 화재, 폭발, 봉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합니다.



1층에 있는 100㎡ 이상 시설 의무가입

- 1층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100㎡ 이상 시설 (법업신고증 면적 기준)



- 1층 외에 다른 층에 있는 음식점이라도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되는 100㎡ 이상의 시설은 의무가입대상

가입시기

- 신규 음식점 : 영업 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가입

연간 보험료 2만원으로 음식점 이용객 등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 보장

- 100㎡ 음식점 기준 연간 보험료는 2만원, 300㎡ 정도는 2만 5천원 수준
 - * 단, 보험료는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제3자 인명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까지 (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사고 당 10억원 까지** 보장
 - * 5천만원의 화재, 폭발, 봉괴 손해도 보장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가입후 무연 기간 | 과 태 료 |
|---------------|----------------------|
| 10일 이하 | 10만원 |
| 10일 초과 30일 이하 | 10만원+11일제부터 1일당 1만원 |
| 30일 초과 60일 이하 | 30만원+31일제부터 1일당 3만원 |
| 60일 초과 | 120만원+61일제부터 1일당 6만원 |

*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주세요.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에 있는 일반·휴게음식점은 가입 제외

- 「화재로 인한 화재보험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세손해배상특약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특수건물에 위치한 일반·휴게음식점

특수건물

-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병원, 관공숙원, 협소, 공학장,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일반숙박업소, 대규모점포
-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 이파루, 주차장등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건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다중이용업소

- 2층 이상에 위치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시설
- 횡단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66㎡ 이상인 시설

-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가 있는 국·공유시설에 위치한 일반·휴게음식점



자주 묻는 질문

-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일반적인 화재보험과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보증을 말하는 반면 재난보험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상해주는 보증을 말합니다. 즉, 화재보험은 자기의 손해, 재난보험은 타인의 손해 보상이 주목적입니다.

- 화재·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보상한도* 및 영조 범위 등이 달라 가입해야 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무지 사례는 중첩되는 것으로기 확인되고, 파손할 경우에는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보전료 부담이 가능합니다.
 * 화재·영업배상책임(영업배상)에 대해 시군구 보상관리 부서 문의가 있으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시군구 무관

[배상책임보험 적용 예시] 제9차(2019)부터 변경
 ① 화재는 이 전과제 적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의 지급부담에서 보상이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을 보상합니다.
 ② 영업배상책임(영업배상)에 가입하여야 할 경우, 불구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입금액이한 지급부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③ 화재·영업배상책임(영업배상)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불구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입금액이한 지급부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문의전화

※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주세요.

| | | | |
|---------------|-----------|-----------|-----------|
| MERITZ | 1566-7711 | 현대해상 | 1588-5656 |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KB손해보험 | 1544-0114 |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DB손해보험 | 1588-0100 |
| Heungkuk 손해보험 | 1688-1688 | The-K손해보험 | 1566-3000 |
| L&M 손해보험 | 1588-5114 | NH손해보험 | 1644-9000 |
| 수협 | 1588-4119 | 삼성 | 1544-3030 |
| MG새마을금고 | 1599-9010 | MG손해보험 | 1588-5959 |

인터넷 직접가입 보험상품

- 취급보험사 : 농협손해보험, MG손해보험
- 가입방법 : 농협손해보험(www.nhfire.co.kr) 또는 MG손해보험(www.instip.co.kr) 접속하여 가입
- 손익일 사항 : 개인정보 및 연락처 정보, **자살 고충번호**, 국민연금번호, 보험료 지급수단(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입) 등
- 주요특징 : 365일 연중무휴 보험가입 가능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및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안내

(자료제공: 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 ☎ 211-4324)

건축허가 또는 그와 관련된 민원 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및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안내입니다.

□ 추진배경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매입 및 건축설계 후 행정청의 불허가 사례 지속적 발생(행정심판 증가)
- 건축허가 가능여부등을 건축허가 신청 전 사전확인으로 토지매입 및 설계비에 소요되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예방과 민원 처리기간 단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미연에 방지

□ 개 요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 건축허가 부서에 신청하면 건축허가 가능여부, 규모, 건축허가 조건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제도
-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건축허가, 공장설립,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으로 청구된 민원을 심사하는 제도
- (신청방법)
 -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 세움터(<https://cloud.eais.go.kr>)
 -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 시·군 민원부서

□ 홍보내용

- 도민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및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요청



사전심사청구제란?

●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 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전심사결과(가·부)를 알려줌으로써 불가 처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민원처리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 처분이 아닙니다.

- 운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30조
- 대상민원** ▶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 인·허가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
- 운영기간** ▶ 연중
- 접수처** ▶ 시·군 민원실
- 처리기간** ▶ 총 30일(대상민원별 상이)



민원사전심사청구제도 처리절차



경상남도 | 건축주택과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Tel. 055-211-4324 Fax. 055-211-4319

정기 연도는 청원서 제출로 정산

도민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건축허가 사전결정 제도 안내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건축허가 사전결정 제도란?

● 이 민원은 건축허가 신청전 해당 대지에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실계를 약식으로 작성한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 건축물의 규모, 건축허가 조건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제도로, 건축물을 새로이 짓고자 하는 도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운영근거** ▶ 건축법 제10조
- 신청방법** ▶ 온라인(세움터), 방문, 우편
- 접수처** ▶ 시·군 건축허가부서
- 처리기간** ▶ 총 45일
- 수수료** ▶ 없음



누가, 무엇을 신청하나요?

건축물을 새로이 짓고자하는 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결정 내용

- 0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 02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 0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민원인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온라인 신청 방법은?

▶ 세움터 (<https://cloud.eais.go.kr>)

신청서 내려 받기는?

▶ 경상남도홈페이지 (<http://www.gyeongnam.go.kr>)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 진행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전결정제도 효력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2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 안내

(자료제공: 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 ☎ 211-44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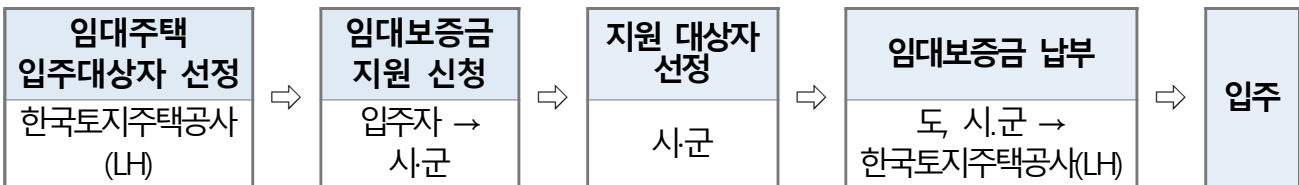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이란?

-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 가구에게 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 30년 이상)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 업 개 요

- 지원대상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무주택가구
 - 같은 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 무주택가구
- 지원기간 : 1회 2년, 2회 연장 가능(최대 6년)
- 지원조건 : 본인부담 계약금 외 보증금(최대20백만원) 전액 무이자 지원, 지원주택 퇴거 시 원금 회수

□ 사업 추진 절차



□ 사업 지원신청 안내

| 시·군 | 연락처 | 시·군 | 연락처 | 시·군 | 연락처 | 시·군 | 연락처 |
|-----|-------------|-----|-------------|-----|-------------|-----|-----------|
| 창원 | 225-4224 | 밀양 | 359-5388 | 창녕 | 530-1385 | 함양 | 960-4813 |
| 진주 | '21년 사업 미추진 | 거제 | '21년 사업 미추진 | 고성 | 670-2275 | 거창 | 940-3606 |
| 통영 | 650-5746 | 양산 | 392-2474 | 남해 | 860-3074 | 합천 | 장기임대주택(X) |
| 사천 | 831-3218 | 의령 | 570-3534 | 하동 | '21년 사업 미추진 | 경남도 | 211-4474 |
| 김해 | 330-3919 | 함안 | 580-2714 | 산청 | 장기임대주택(X) | | |

- 각 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 신청 안내

(자료제공: 도시교통국 건축주택과 ☎ 211-4324)

도심 속 열린 쉼터를 제공하고자 시설노후 및 기능저하로 이용도가 낮아진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 안내입니다.

□ 추진배경

- 시설노후 및 기능저하로 이용도가 낮아진 공개공지*에 도민 편의 증진
 - 공개공지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도심 속 쉼터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 공개공지는 도심지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 등 대형 건축물 건축 시 대지면적 10% 범위에서 건축물에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시설

□ 개 요

- (사업대상) 5년이상 경과된 도심지 주요 가로변 공개공지
- (사업량) 도심지 공개공지 10개소(도심보행길6, 일반지역4)
- (사업내용)
 - 수목 식재, 휴게시설 정비, 안내판 설치 등 공개공지 리모델링 비용 지원
 - 관리주체와 협약서 체결, 공동 유지관리 체계(개방관리, 2년간 하자관리)
 - “도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공적공간” 임을 안내하는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 (지원내용) 공개공지 당 최대 1,500만원 지원(사업비 자부담 50%)
- (신청방법) 시·군 건축부서
- (신청기한) 2021년 2월 5일 까지

□ 홍보내용

- 도심 쉼터 복원을 위한 공개공지 되살리기 시범사업에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요청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자료제공: 도시교통국 토지정보과 ☎ 211-4433)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사항과 일치하지 않거나 미등기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하기 위함.

사업개요

- 시행기간 : 2020. 8. 5. ~ 2022. 8. 4.(2년간)
- 적용대상
 - 읍·면지역 : 토지 및 건축물
 - 시 지역 : 농지 및 임야(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인 창원, 김해는 읍면지역만 해당)
-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

확인서발급 신청서류(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 확인서발급 신청서
- 보증서 : 동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5명(자격보증인 1명 포함)에게 보증서에 날인을 받고 지정보증인에게 보증서를 대장에 등록 후 제출
- 미등기인 경우 미등기사실증명서(등기소 발급)
- 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귀속부동산 및 국·공유 부동산에 한함)
- 기타 소유권 분쟁 유무,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서류 등

벌 칙

-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는 등의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의사항

-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규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 배제 조항이 없어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분할허가, 장기 미등기에 따른 과징금 내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은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에게 보증에 대한 보수(법무부령)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업무처리 흐름도



시군구 담당부서 연락처

| 시군구 | 부서 | 전화번호 | 시군구 | 부서 | 전화번호 |
|-----------|-------|--------------|-------|-------|--------------|
| 창원시 | 건축경관과 | 055-225-4393 | 의령군 | 민원봉사과 | 055-570-2442 |
| 창원시 의창구 | 민원지적과 | 055-212-4163 | 함안군 | 종합민원과 | 055-580-2274 |
| 창원시 마산합포구 | 민원지적과 | 055-220-4162 | 창녕군 | 민원봉사과 | 055-530-1343 |
| 창원시 마산회원구 | 민원지적과 | 055-230-4164 | 고성군 | 민원봉사과 | 055-670-2773 |
| 진주시 | 토지정보과 | 055-749-8432 | 남해군 | 민원봉사과 | 055-860-3023 |
| 통영시 | 민원지적과 | 055-650-4833 | 하동군 | 민원과 | 055-880-2093 |
| 사천시 | 토지관리과 | 055-831-2351 | 산청군 | 민원과 | 055-970-6322 |
| 김해시 | 토지정보과 | 055-330-3763 | 함양군 | 민원봉사과 | 055-960-4482 |
| 밀양시 | 민원지적과 | 055-359-5216 | 거창군 | 민원소통과 | 055-940-3832 |
| 거제시 | 토지정보과 | 055-639-3623 | 합천군 | 민원봉사과 | 055-930-3202 |
| 양산시 | 토지정보과 | 055-392-2402 | 하동구역청 | 민원행정팀 | 055-880-6464 |

경상남도 토지정보과 ☎ 211-4433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예측 시스템』 이용 안내

(자료제공: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 211-6344)

□ 「주요 농산물 가격예측 시스템」이란 ?

- 도내 주요 농산물 10개 품목에 대한 가격예측 정보 및 도매시장 반입량, 주산지 기상상황 등을 제공하는 농산물 수급정보 홈페이지입니다.
-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가격 정보와 도매시장 반입량 등을 활용하여 농가의 생산물 출하 시 분산출하를 유도하여 농가소득 향상과 수급안정화를 지원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yeongnam.go.kr/bigdatafarm/>

□ 주요내용

- (이용대상)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
- (대상품목) 고추(청양, 풋고추, 파리), 깻잎, 마늘, 양파, 딸기, 파프리카, 양상추, 부추, 시금치, 호박(애호박, 쥬키니)
- (정보제공) ‘상’이상 등급의 도매시장 경락가 평균값과 도매시장 반입 물량, 빅데이터 분석한 7일간 예측가격, 기상상황 정보 등
- (이용방법) 인터넷 창에서 ‘가격예측 시스템’ 검색 후 이용

•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

- ① 스마트폰에서 ‘가격예측 시스템’ 인터넷 검색
- ② 툴바설정에서 ‘홈화면 추가’ 하기
- ③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 생성
- ④ 검색 없이 한번 터치로 바로 접속!

【주요 농산물 가격예측 시스템 화면구성】

| | | |
|----------------|------------------------|----------------------------|
| | | |
| <p>홈페이지 메인</p> | <p>수급(유통)분석 : 가격동향</p> | <p>수급(유통)분석 : 품목별 수급상황</p> |

○ 홍보리플릿



간편접속!

1. PC,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창에 '가격예측 시스템' 입력
2. 접속 후,
 - ① 물바설정에서
 - ② '홈화면 추가' 클릭
3. 휴대전화 홈화면에 바로가기 생성 '검색없이 바로 접속'



한번 클릭
가격예측 정보
바로보기!

정보 시스템



폭등 및 폭락에 대비,
7일 후 예측가격을
제공



출하시기 조절 및
홍수출하 예방



읍면별, 주산지별
기상 현황

주요 품목



고추(청양, 파리, 녹광 등),
팻알, 마늘, 양파, 딸기,
파프리카, 양상추, 부추,
시금치, 호박(애호박, 주키니)

참 고

경남 주요 농산물 가격예측 시스템

□ 가격예측 시스템 구성

○ (홈페이지 메인)

- (홈페이지 도메인) <http://www.gyeongnam.go.kr/bigdatafarm/>
- (홈페이지 IP주소) <http://210.104.249.51/bigdatafarm/>



○ (가격동향)

- (홈페이지 → 수급분석 → 가격동향) 주간수급예측, 전일가·2일전일가, 차액정보, 예측 그래프



○ (수급상황)

- (홈페이지 → 수급분석 → 품목별 수급상황) 1일전·1개월전·1년전 공급량 시각화 및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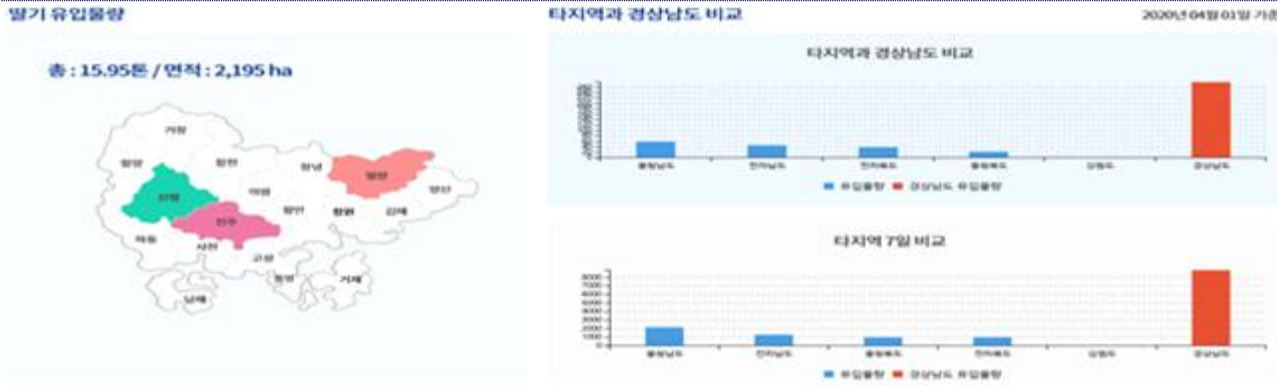
○ (빅데이터)

- (홈페이지 → 수급분석 → 빅데이터) 전일·7일간 가격예측, 예측가격변동률, 결정요인분석



○ (생산통계)

■ (홈페이지➡생산관측➡생산통계) 도내 총면적, 일일·7일간 생산량 표출 및 타도 비교



○ (농가경영분석)

■ (홈페이지➡생산관측➡농가경영분석) 생산량, 판매단가, 총수입, 경영비, 생산비, 소득, 순수익 표출
→ 「주요 농산물 생산실태 조사분석 모델링 용역」 상호협력 분석결과 반영



○ (기상정보 : 주산지별, 읍면별)

■ (홈페이지➡농업기상➡주산지별 기상정보) 날씨(오전,오후), 온도(최고, 평균, 최저), 습도(최고, 평균, 최저), 풍속, 강수량(오전, 오후) 강수확률(오전, 오후)

경상남도 지역별 주산지기상현황

| 지역 | 일지 | 날씨 | 온도(°C) | 습도(%) | 풍속 | 강수량(mm) | 강수확률(%) |
|----|------------|----|-------------------|--------------|-------|---------|---------|
| | | | 최고/평균/최저 | 최고/평균/최저 | (m/s) | 오전 / 오후 | 오전 / 오후 |
| 영남 | 오전 (04:00) | | 19.0 / 13.0 / 4.0 | 80 / 46 / 20 | 1 | 0 / 0 | 0 / 20 |
| | 나중 (04:00) | | 20.0 / 13.0 / 3.0 | 80 / 50 / 30 | 1 | 0 / 0 | 30 / 0 |
| | 오래 (04:04) | | 19.0 / 13.0 / 4.0 | 65 / 42 / 20 | 3 | 0 / 0 | 0 / 0 |
| 영남 | 오전 (04:00) | | 18.0 / 9.0 / 2.0 | 85 / 50 / 20 | 0 | 0 / 0 | 30 / 30 |
| | 나중 (04:00) | | 17.0 / 9.0 / 1.0 | 75 / 46 / 25 | 1 | 0 / 0 | 20 / 0 |
| | 오래 (04:04) | | 16.0 / 9.0 / 3.0 | 70 / 45 / 25 | 2 | 0 / 0 | 0 / 0 |
| 영남 | 오전 (04:00) | | 19.0 / 13.0 / 4.0 | 80 / 47 / 20 | 1 | 0 / 0 | 0 / 20 |
| | 나중 (04:00) | | 19.0 / 13.0 / 3.0 | 80 / 48 / 30 | 1 | 0 / 0 | 30 / 0 |

○ (기타서비스)

■ (홈페이지➡기타서비스➡수급정보/병해충발생정보/질의응답)

| 수급뉴스 | 병해충발생정보 | 질의응답 |
|--------------------|---------------------------------|--------------------|
| 총 게시물 3건, 페이지: 1/1 | 총 게시물 159건, 페이지: 1/5 | 총 게시물 5건, 페이지: 1/1 |
| 번호 | 제목 | 번호 |
| 1 | 44 KMS 농수축산 주간 거행동(1.00~4.0) | 번호 |
| | 병해충발생정보 제 30 (2020.03.01~03.31) | 제목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안내

(자료제공: 기후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211-6645)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에 대한 재활용 체계 전 단계 개선을 위하여 '20.12.25부터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책 홍보입니다.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란?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투명 페트병을 타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제도

□ 주요내용

- 관련근거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462호)
- 시행시기 : '20.12.25.부터 시행
- 대 상 : ('20.12.25) 공동주택* 先시행 → ('21.12.25)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으로 전국적 확대
* (공동주택) ①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②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 아파트

□ 관련 추진사항

- 환경부에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평균 2매의 마대 배포 중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사업(창원,김해) 실시('20년)

| 구분 | 사업비(백만원) | 사업량(세대수) | 전단지 배부 | 전용그물망 | 전용봉투 |
|----|----------|----------|--------|--------|-----------|
| 계 | 340 | 312,345 | 29만부 | 30,056 | 2,319,410 |
| 창원 | 120 | 95,741 | 10만부 | 8,556 | 994,410 |
| 김해 | 220 | 216,604 | 19만부 | 21,500 | 1,325,000 |

□ 홍보내용

- 경남 플라스틱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생활 속에서 도민들이 분리배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요청
- 특히, 페트병 분리배출 시 압착하여 뚜껑 닫아 배출하도록 안내
⇒ 뚜껑의 경우, 재활용 과정의 세척 공정에서 비중차이에 따라 몸체와 분리가 가능하여 배출의 편의성 및 부피 저감 등을 위해 압착 후 뚜껑을 닫아 배출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왜 분리해서 버려야 할까요?



국내 재활용품은
유사품목 혼합배출로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



부족한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해
연 2.2만톤의 페테트 수입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로
연 2.9만 톤에서 10만톤으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원료 확보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투명 페트병!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내용물은
싸-악
비우기!



라벨은
착
제거하기



피그리트리고
파-악
뚜껑 달가-



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대상 공동주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왜 1년 뒤 시행인지?

- ☞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 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
- ☞ 연립, 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혼합방지 대책 등을 추가로 마련 후 '21.12.25부터 시행할 예정임

② 뚜껑을 닫고 배출하라고 하는데, 뚜껑은 다른 재질이라 섞이면 재활용이 어려운 게 아닌지?

- ☞ 최근 플라스틱 배출량이 많아져 부피를 줄이기 쉽도록 압착 후 뚜껑을 닫도록 안내하고 있음
- ☞ 뚜껑은 PE, PP 등 물에 뜨는 재질이며 몸체인 PET는 물에 가라앉는 재질임, 이에 따라 재활용 필수 공정인 세척 과정에서 분리할 수 있어 같이 배출해도 재활용할 수 있음
 - ※ 다만, 철로 된 뚜껑은 따로 떼서 배출
- ☞ 다만, 뚜껑을 닫지 않고도 충분히 압착 및 이물질 제거한 상태라면 뚜껑을 닫지 않고 배출하는 것도 가능함

③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대상인 음료·생수 외에 투명한 간장통,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등도 같이 배출이 가능한지?

- ☞ 간장통은 원칙적으로 대상은 아니나 내용물을 깨끗이 씻으면 같이 배출 가능함
- ☞ 그 외 일회용컵,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투명페트병과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야함
 - ※ (일회용컵) PET 외에 PS 등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다른 재질로 생산된 경우가 있고, 직접인쇄가 많아 재활용 품질이 떨어짐
 - (트레이) 스티커, 직접인쇄가 많아 재활용 품질이 떨어지고, 성형을 위해 일부 순수 PET 이외의 재질(PET-G)을 혼합하여 제작한 용기가 있음

④ 분리배출보다 먼저 라벨을 떼기 쉽게 하고, 유색페트병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 환경부는 '19.12.25일부터 음료·생수 페트병에 유색 몸체 및 잘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사용을 금지하고,
* 열알칼리성 수용액(NaOH 2%)에서 분리가 되지 않는 접착제
- ☞ 라벨도 절취선, 제거용 손잡이 등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구조를 넣도록 하고 있음
 - 절취선을 넣지 않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라벨 사용 시 ‘재질·구조 등급평가’에 따라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부여하여 이를 제품 표면에 표시하고, 생산자의 비용부담*을 강화
 -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생산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을 20% 할증
- ☞ 올해 12월부터는 상표띠(라벨)가 없는 먹는샘물(생수)도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 「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20.12.4.시행), ‘라벨 없는 먹는샘물(소포장제품)’ 과 ‘병마개에 라벨이 부착된 먹는샘물(날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

⑤ 어릴 때부터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학교에서도 하는 등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게 아닌지?

- ☞ 현재 TV,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페트병 생산·유통업계,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음
 - * 환경부 유튜브에 “매미킴 김동현이 알려주는 페트병 분리배출” 게시
- ☞ 아울러, 교육부와 협의하여 분리배출 전 과정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여 학교 등 교육기관에 배포할 예정

⑥ 옷 한벌을 만드는데 필요한 페페트병의 양은 얼마인가?

- ☞ 옷의 종류 및 디자인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 티셔츠 한벌에 500ml 12병 또는 2L 5병이 들어가며, 긴소매 기능성 자켓은 500ml 약 32병 소요

⑦ 관내 아파트에서는 배포된 마대보다 작은 마대를 쓰거나, 비닐로 수거하고 있어 배포된 마대 사용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 이번에 배포된 마대는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크기를 배포한 것으로 전국단위로 배포가 이뤄지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배포된 마대가 아닌 기존 수거 방식을 활용하여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동참해줄 것을 독려

⑧ 마대를 받지 못한 곳도 있는데 마대를 받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 자원순환 도우미가 배치된 1.5만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배송

☞ 도우미 미배치 등으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인데도 못 받은 곳 중 현재 수요조사를 마친 70개 지역 약 4천장은 12월~1월초 중 요청받은 배송지로 발송(아파트 직접 배송, 일부 지자체는 시·군·구청으로 배송)할 예정

⑨ 배포된 마대인 단지당 2매는 대단지 등에서는 사용하기에 양이 너무 부족한데 추가 배포 계획이 있는지?

☞ 현재 추가로 3.6만매를 제작하고 있으며, 1월 중 집중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1월부터 순차적으로 배송

☞ 추가 배포는 지자체별 공동주택 세대수, 배출하는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으로 직접 발송할 예정(추후 1월 중 공문으로 안내)

☞ 추가로 기존에 배출장소마다 설치된 플라스틱 수거함 2~3개 중 1개를 페트병 전용으로 표시해서 사용하면 추가 마대 없이도 가능함을 안내하고

☞ 추가로 필요하다면 아파트단지 등에서 마대를 추가로 구비하여 협조해 달라고 요청

* 현재 배포하는 마대는 다회용이긴 하나, 제도 초기 정착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후 별도 배출을 위한 마대는 배출자가 구비 필요

⑩ 배포된 마대를 무시하고 수거업체에서 혼합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혼합수거 및 혼합배출에 대한 민원이 다량 있을 것으로 예상
- ☞ 관할 내 공동주택에는 올해 11월부터 시행되는 배출자 신고제도에 따라 페트병이 별도 신고항목에도 들어가 있는 점을 안내하면서 별도 배출이 불가피함을 안내
 -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5, 별지 제4호의9서식
- ☞ 수거업체에는 혼합수거를 최대한 자제하고 협조해줄 것을 요청
 -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도록 규정, 이를 위반 시 법 제66조 제1호, 시행규칙 제83조 및 별표 21의 2. 다. 6) 라)목에 따라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으나, 처벌 시 수거 공백, 법적다툼 지속 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처벌규정의 언급보단 협조를 우선적으로 요청
- ☞ 지속적인 비협조 시 추후 공공책임수거 전환 시 참여를 제한하는 등 수거체계 관리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⑪ 배포되는 마대 크기와 모양은 어떻게 되는지?

| 12월 아파트 배포 마대 | 추가 배포예정 마대 |
|---|--|
|  |  |
| <p>사이즈(cm) : 90(가로)×90(세로)×120(높이)</p> | <p>사이즈(cm) : 100(가로)×100(세로)×145(높이)</p> |

미세먼지 비상 시,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안내

(자료제공: 기후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 211-669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시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인 5등급 자동차의 도심지 운행제한 필요성 및 친환경전환 유도를 통한 노후차량(저공해 미조치) 제로화 추진
- ※ 올해 전국 17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전격 시행

□ 개요

- (시행시기) '20. 11 1. 이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年 2~4일 추정
 - 익일 06 ~ 21시 시행(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 이를 연속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mu\text{g}/\text{m}^3$ 를 초과 시 발령
- (제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전국) * 도내 167천대('20.9월 기준)
- (제한지역) 창원, 진주, 김해, 양산(4개 시)
 - 전 시·군 단계별 시행(인구 30만 이상 시 우선 추진)
- (제한방법) 59개 지점 75대 무인단속시스템(cctv)
- (제외대상) 저공해조치,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영업용 자동차 등
- (위 반 시) 10만원/일(1일 1회 최초 적발 지자체 부과)
 - ※ 단, '21. 12. 31.(계도기간)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홍보내용

- 1833-7435(콜센터) 및 055-114에서 5등급 여부 확인 가능하며, 5등급 차주께서는 저공해조치(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 협조
 -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 필요 및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환경과에 문의 바람
- 타 지역 운행 시 발령시기 및 단속기준이 상이하여 해당 지역의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홈페이지에서 확인
- 수도권 계절관리제기간('20.12.~'21.3.) 상시운행제한 시행에 따라 홍보 협조

깨끗하게 만드는 환경의 새로운 경남 경상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

| | |
|--|--|
| <p>시행일 '20년 11월 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 ~ 21시까지 운행제한 (주말 및 공휴일 제외)</p> <p>제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전국 대상)</p> <p>제한지역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 전 시·군 단계별 추진 예정</p> | <p>제외대상 저공해조치, 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등</p> <p>과태료 1일 1회 10만원 ※ 단, '21.12.31.(계도기간)까지 한시적 과태료 부과 유예</p> |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확인하기

검색창

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020.12 ~ 2021.3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emissiongrade.mecar.or.kr
1833-7435 또는 지역번호+120



차량 운행제한
매년 12월 ~ 3월 온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의 도서
5등급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단속대상
전국 5등급 차량이
단속대상이 됩니다.
예, 5등급 차량이 아닌
경기도의 도서 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지방청을 제외하고 동남해안 지방청입니다.

단속 지역 대상
저감장치 부착차량,
간접차량, 경연차량, 보조차량

| | | |
|-----------------|-----------------|-----------------|
| 서울 | 인천 | 경기도 |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 간접차량 | 간접차량 | 간접차량 |
| 경연차량 | 경연차량 | 경연차량 |
| 2020년 12월 1일 이후 | 2020년 12월 1일 이후 | 2020년 12월 1일 이후 |

단속방법 및 과태료

시행시기 매년 12월~3월

단속방법 지자체 운영제한 단속카메라 및 자동차 배출가스 운행제한 시스템 활용

과태료 1일 10만원
보통의 차량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포서동시 : 위반차량 통 2021.11.30 까지
포서동시 또는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과태료 부과 취소·면제



내차 배출가스 등급확인, 어떻게 하나요 ?

인터넷 검색 조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계 | emissiongrade.mecar.or.kr | 환경부 콜센터 | 1833-7435
경부 24 | www.gov.kr | KT114 생활정보서비스 | 114

5등급 차량인데 어떻게 해야하죠 ?



문의처: 환경자동차협회 | 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344-0907
대한LPG협회 | LPG차 구매지원 1833-6901
해당 시·도(자살어 등록된 지자체) 지역번호 +120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전국 최초 시행

(자료제공: 농정국 동물방역과 ☎ 211-6553)

동물병원에서 주요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한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전국 최초로 창원지역에서 시범 실시합니다.

□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란 ?

- 동물병원에서 주요 다빈도 진료항목에 대해 병원마다 진료서비스 수준에 따라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해서 병원 내에 게시하는 제도

※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제 : 동물병원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

□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시범시행

- 시행시기 : 2020. 10. 1.부터
- 시행지역 : 창원시 관내 반려동물병원 70개소
 - 향후 주요 市 단위(진주·김해·양산·거제)로 점진적 확대 후 도내 전역 220개 반려동물병원으로 확대
- 표시방법 : ('20) A4용지 출력 → ('21) LED전광판 등 표시장비 활용
- 표시항목 : 4대 분류 20개 다빈도 진료항목, 향후 순차적 확대
 - 기본진찰료 2종, 예방접종료 9, 기생충예방약 7, 영상검사료 2

□ 경남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

- 시행시기 : 2021. 2월부터 신청·접수
- 주요 정책사업
 - 저소득층 대상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자부담 포함) / 5,000명
 - 일반 도민 대상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자부담 포함) / 10,000두
 - 자율표시제 참여 동물병원 진료비 표시장비 지원(자부담 포함) / 70개소



디지털 배움터(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안내

(자료제공: 기획조정실 정보담당관 ☎ 211-2614)

코로나시대에 필수적인 디지털 생활을 위한 무료 교육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 교육대상 : 경남도민 누구나
- 교육비용 : 무료
- 모집/교육기간 : 연중
- 교육과정

| 교육과정 | 교육 내용 |
|--------|---|
| 디지털 기초 | - 스마트 기기(스마트 폰, 태블릿, AI 스피커 등), 비대면 화상솔루션, SNS 등의 사용법과 활용 역량 향상을 통하여 디지털과 친숙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
| 디지털 생활 | - 키오스크(무인주문), 교통, 금융, 전자정부(복지서비스, 지원금신청, 정부24)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거나 경제·사회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서비스를 학습하는 과정 |
| 디지털 중급 | - 경제·사회활동과 직접 연계되거나 일정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수준 등 자기주도의 디지털 학습이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 |
| 특별교육 | - 1인 미디어 활동(유튜버, 팟캐스트 등), 신기술 체험(3D프린팅, 드론, 코딩, AI, 데이터전처리 등) 등 체험체감형 프로그램 |

※ 코로나19 완화 시까지 비대면 온라인 및 화상 교육으로 진행

- 가까운 디지털 배움터 찾아보기 : www.디지털배움터.kr
- 교육 신청 등 문의(콜센터) : 1800-0096
 - 온라인 신청 : eduhelp.ktcs.co.kr/gyeongnam
- 교육혜택 : 교육수료자에게 추첨을 통해 매월 소정의 기념품 증정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자료제공 : 재난안전건설본부 건설지원과 ☎ 055-211-2923)

도내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제도를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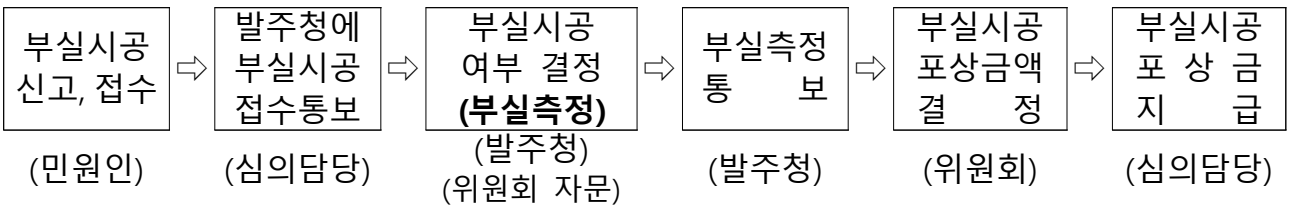
□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제도란?

-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어 부실시공으로 결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부실시공 신고대상은?

- 도(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또는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이며 포상금 지급대상은 부실시공으로 결정된 도급공사비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입니다.

□ 처리절차



□ 포상금 지급기준

| 부실시공 등급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과한 부실벌점 | 포 상 금 지급기준 |
|---------|--|------------|
| 1 등급 | 벌점 3점 | 1,000만원 이하 |
| 2 등급 | 벌점 2점 | 600만원 이하 |
| 3 등급 | 벌점 1점 | 200만원 이하 |
| 해당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로 시정이 가능한 경우 및 부실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없음 |

□ 신고방법(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함)

- 전화신고 후 관련서류 송부(우편 또는 방문신고) : 055-211-2923, 경상남도 건설지원과
- 팩스를 이용한 신고 : 055-211-2919
- 신고서식 : 붙임서식 작성 후 제출

| 부실시공 신고서(제8조 관련) | | | | |
|--|------|--|--------|-------|
| 신 고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 주 소 | |
| 신고공사 | 사업명 | | 현장 위치 | |
| | 공 종 | | 발생일자 | 년 월 일 |
| 부실시공 내 용 | | | | |
| 증빙서류 | | | | |
| 비 고 | | | | |
| <p>「경상남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p> | | | | |

태풍 등 풍수해 발생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촉구

(자료제공: 재난안전건설본부 자연재난과 ☎ 211-2835)

풍수해와 지진재난으로 피해를 입으셨을 때 경제적 안정과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하여 재난을 대비합시다.

☐ 풍수해보험이란?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은?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재고자산) 모두 가입할 수 있고, 소유자 외 세입자도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보험료 부담은?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해드립니다.
- ☞ (정부지원율) 주택·온실 70%, 소상공인 70%, 취약지역* 87% 지원
- *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산사태 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

☐ 소상공인 우대혜택은?

- 보험가입 증권(사본)으로 아래의 우대혜택(중복가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 |
|-----|---|------------------------------------|
| 혜택 | 1.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인하 평균 1.2% > 0.8% | 대출금리에서 0.1% 우대적용 ☞ 대상: 6종의 정책자금 |
| | 2. 신용보증서 보증비율 상향 일반 85% > 90% | |
| | 3. 5천만원이하 보증 시 신용보증심사 우대 약식평가, 한도상향 등 우대적용가능 | |
| 문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콜센터 1588-7365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 가입문의

- 시·군청 재난부서, 읍·면·동 풍수해보험담당자, 5개 판매보험사

| DB손해보험 | 현대해상 | 삼성화재 | KB손해보험 | NH손해보험 |
|--------------|--------------|--------------|--------------|--------------|
| 02)2100-5103 | 02)2100-5104 | 02)2100-5105 | 02)2100-5106 | 02)2100-5107 |

붙임**풍수해보험 주요 보상사례** 주택

| | | | | |
|----|-------|--------------|----------------|--------------------------------|
| 가입 | 목적물 | 주택 | 지역 | 남해군 |
| | 총보험료 | 41,900원 | 가입자부담 | 19,900원 |
| | | | 보험료지원 | 22,000원 |
| 피해 | 피해일자 | 2019. 9. 22. | 피해유형 | 태풍 |
| | 손해구분 | 전반파 | 피해면적 | 33m ² |
| 지급 | 지급보험금 | 33,750,000원 | 미가입 시 재난지원금 | 반파 6,500,000원 (보험금이 5.2배 큼) |

 온실

| | | | | |
|----|-------|--------------|----------------|---------------------|
| 가입 | 목적물 | 온실(비닐하우스) | 지역 | 밀양시 |
| | 총보험료 | 2,895,500원 | 가입자부담 | 243,200원 |
| | | | 보험료지원 | 2,652,300원 |
| 피해 | 피해일자 | 2016. 10. 5. | 피해유형 | 태풍 |
| | 손해구분 | 소파 | 피해면적 | 1,650m ² |
| 지급 | 지급보험금 | 15,859,800원 | 미가입 시 재난지원금 | 소파는 재난지원금 미지원 |

 소상공인

| | | | | |
|----|-------|--------------|----------------|--------------------|
| 가입 | 목적물 | 소상공인 재고자산 | 지역 | 포항시 |
| | 총보험료 | 81,300원 | 가입자부담 | 40,200원 |
| | | | 보험료지원 | 41,100원 |
| 피해 | 피해일자 | 2019. 10. 3. | 피해유형 | 태풍 |
| | 손해구분 | - | 피해면적 | - |
| 지급 | 지급보험금 | 30,000,000원 | 미가입 시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미지원 |

☞ (자료확인) 재난안전포털(www.saferkorea.go.kr) → 풍수해보험 → 풍수해보험자료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상가 / 공장,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은실 소유자 누구나 가능합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공장, 주택(아파트 포함), 은실(농업), 상가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안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합니다.

총 보험료의 70~92%를 지원하고 지자체별 추가지원

- 70% ~ 92% 정부지원
- ※ 일반 70% 차상위 계층 78.4%
- 기초생활수급자 87%, 재해지역의 주택 87%
- 소상공인 10% 기본지원
- < 2021년 기준 >



가입방법은 5개 보험사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풍수해보험 > 가입과 사고신고 > 보험사소개

- DB손해보험
- 현대영상화재보험
- 삼성화재생명보험
- KB손해보험
- NH손해보험

2021년부터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지금 바로 웹툰으로 쉽고 재미있게 확인하세요!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안내

(자료제공: 자치행정국 행정과 ☎ 211-362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시행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안내

□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0. 12. 10. ~ 2022. 12. 9. (2년간)
- 신청대상
 - 희생자·피해자 및 그 유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그들로부터 전해들은 자
- 신청방법 : 문서가 원칙,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신청 가능
※신청서는 도, 시군구 또는 위원회 누리집 내려받기 또는 방문 시 교부
- 접수처 : 시·군·구, 시·도 또는 과거사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위원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5층
(☎ 02-3393-9700)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위임장), 증빙자료 등

□ 조사대상

-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 강점이 이후 '05.12.1.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광복이후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및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광복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진실·화해

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접수기간 2020. 12. 10 ~ 2022. 12. 9.(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 우편·방문접수 |

-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청서류 • 진실규명신청서 1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 기타 조사 참고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www.jinsil.go.kr)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규명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현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직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억문사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방법 등 안내

(자료제공: 여성가족아동국 아동청소년과 ☎ 211-4274)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개념, 처벌, 유형, 신고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아동학대 개념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

□ 아동학대 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학대치사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중상해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 3년이상 징역

□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 유형/징후 | 신체적 징후 | 행동적 징후 |
|-------|---|---|
| 신체학대 | 발생회복 있어 시간차 있는상처 사용된 도구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손바닥, 발바닥, 등, 엉덩이에 담뱃불자국, 양말모양 등 상처, 화상자국, 묶은 줄 화상 등 | 어른과 접촉회피, 다른아동이 올 때 공포나타냄, 공격적이거나 위축적인 극단적 행동, 부모에 대한 두려움, 집에가는 것을 두려워함,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부모가 손상을 알려줌 |
| 정서학대 | 성장장애, 신체발달 저하, 언어장애 | 특정물건에 대해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 뜯음, 반사회적 및 파괴적 행동장애 수면장애, 극단행동, 지난친 행동 등 |
| 성 학대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찢어지고 피로 얼룩진 소옷,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임신 등 |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 기괴하고 미묘한 성적 행동과 지식 친한친구가 없음, 비행, 가출 등 |
| 방임 | 지속적인 배고픔, 나쁜 위상상태, 부적절한 옷차림, 의학적 치료와 치과치료 부족 지속적인 피로, 불안정감, 수업중 조는 태도 |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장시간에 걸친 감독소홀, 비행 또는 도둑질 등 |

□ 아동학대 신고 방법


| | |
|---------------------|---|
| <p>언제 ?</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 <p>무엇을 ?</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p>※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토록 합니다.</p> |
| <p>어떻게 ?</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시·군청, 경찰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 -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6 -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김해시 김해대로 2385번길 8 <p>※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p> |




이 포스터는 2017년 제 3회 아이지킴콜 112 콘테스트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용기
아이지킴콜 112

더 이상 외면하지 마세요.
 아동학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의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수상함이 느껴진다면 조금만 용기 내어 주세요.
 당신의 용기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지킴콜 112, 아이들을 지키는 용기 있는 신고입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지킴콜 112 앱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모바일 앱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아동학대' 또는 '아이지킴콜112'를 검색하세요!

경남도 난임 극복 지원사업 확대 지원 (6월~)

(자료제공: 여성가족아동국 가족지원과 ☎ 211-5263)

□ 대상사업 :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사업

- ①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 : 도내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부인의 주소지가 도내)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일부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

- ②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사업 : 도내 난임부부에게 난임의 원인, 난임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난임진단 검진비 일부 지원

□ 주요 확대내용 : 부인의 연령 제한 폐지 및 사실혼 관계 부부 포함 등

- ①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변경

| 구분 | 기존 |
|-------|---|
| 지원 대상 | 부인이 도내 주소지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부인의 연령 만44세 이하, 법적 혼인관계 부부) |
| 지원 내용 | <지원한도> 최대 총10회까지(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1회당 50만원 한도 |

| 구분 | 확대(6.1일 이후) |
|-------|--|
| 지원 대상 | 부인이 도내 주소지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부인의 연령 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
| 지원 내용 | <지원한도> 최대 총17회까지(체외수정 12회, 인공수정 5회) 1회당 20~110만원 한도(시술종류별, 지원 차수별, 연령별 차등) ※ 세부내역 : 참고 |

- ②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사업 : 부인의 연령 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 구분 | 기존 |
|-------|--|
| 지원 대상 | 부인이 도내에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 (부인연령 만44세이하, 법적혼인관계부부) |
| 지원 내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나팔관조영술 등 부부당 1회에 한하여 20만원 한도 지원 |

| 구분 | 확대(6.1일 이후) |
|-------|---|
| 지원 대상 | 부인이 도내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 (연령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
| 지원 내용 | 기존과 동일함 |

□ 신청안내

- 확대시기 : '20. 6. 1.(월)부터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으로 적용, 소급적용 불가
- 신청기관 : 난임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사전에 전화 문의 가능)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 신청(난임부부)→자격조사(보건소)→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난임시술 및 검진, 지원초과의료비 지급(난임부부)→시술비 청구(의료기관)→지급(보건소)

참고1

경남도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시술종류별, 연령별, 지원 회차수별 지원액 차등화
 - 고비용 시술은 인상, 저비용 시술은 인하로 시술종류별 차등 지원
 - 부인연령 만44세 초과 여부 및 지원 회차수에 따라 차등 지원

| 구분 (시술종류별, 지원회차별, 난임여성 연령별) | | | 기존 | 변경 | |
|-----------------------------------|------|------|---------|---------|---------|
| | | | 만44세 이하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체외 수정 | 신선배아 | 1~4회 | 50만원 | 110만원 | 90만원 |
| | | 5~7회 | - | 90만원 | |
| | 동결배아 | 1~3회 | 50만원 | 50만원 | 40만원 |
| | | 4~5회 | - | 40만원 | |
| 인공수정 | 1~3회 | 50만원 | 30만원 | 20만원 | |
| | 4~5회 | - | 20만원 | | |

- 지원항목 : 난임 시술비 일부·전액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 일부 지원(배아동결비 30,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각각 20만원 한도)

참고2

경남도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항목

※ 개인별 상태 등에 따라 검사종류 및 검진비 편차있으나 개인별 평균 20~30만원 부담
(단위 : 원)

| 검사종류 | 금 액 (본인부담금기준) | 검사목적 | 비고 |
|-------------|-------------------------|-------------------------------------|----|
| 기초 혈액검사 등 | 26,200 | 요검사, 혈액검사, 혈청검사, 만성검사, 감염성검사 등 | |
| 기초 호르몬검사 | 58,200 | 난임 관련 호르몬, 착상호르몬, 배란기 점액검사, 난소나이 검사 | |
| 경관점액통과검사 | 4,020 | 정자생존검사 | |
| 난관(나팔관) 조영술 | 29,600 | 난관 및 자궁유착검사 | |
| 자궁경검사&수술 | 350,000 ~ 400,000 | 자궁내 유착, 용종검사 및 제거 | |
| 복강경검사 | 500,000 | 자궁내막증검사 | |
| 정자검사 | 30,000 | 정자상태검사 | |

2021학년도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신입생모집

(자료제공: 통합교육추진단 ☎ 211-3688)

□ 신입생 모집 개요

- 모집과정 : 전문기술과정(주간1년_2021.03.02.부터 교육)
- 지원자격 : 학력·연령제한없이 만15세이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자
- 모집학과 : 컴퓨터응용기계과 60명, 자동화시스템과 60명, 스마트전기과 60명, 산업설비과 60명, 광고디자인과 50명
- 모집기간 : 2021.02.02.까지 접수
- 입학특전 : 교육비 전액무료, 교육수당 지급, 희망자 100% 취업, 기숙사 무료제공
- 입학문의 : ☎ 760-2222, 인터넷 검색창 ‘진주캠퍼스’

2021학년도 전문기술과정(주간1년)

신입생 모집 취업!

홈페이지 · 방문 · 우편접수 검색창에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클릭!

원서접수 : 2021. 02. 02(화)까지

면접 : 2021. 02. 04(목) / 합격자발표 : 2021. 02. 09(화) / 입학 : 2021. 03. 02(화)

취업

희망자100%

전원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교육

전액무료

교재, 실습복
교육비, 기숙사,
식비 등

교육수당

매일지급

교육수당 및
교통비 지급

입학대상

15세 이상 취업의망자
학력·성별 제한없음
학력(전공)·기술 = 명동취업

| | | | | | |
|------------------|--|----------------------------------|---|--|---|
| 모 집 학 과 | 컴퓨터응용기계과 (60명) 항공 및 5축정밀가공 분야 | 자동화시스템과 (60명) 제조자동화 분야 | 스마트전기과 (60명) 전력시스템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 산업설비과 (60명) 특수용접 및 비파괴검사 분야 | 광고디자인과 (50명) 기업광고 디자인제작 및 3D프린팅 분야 |
| | 항공 산업 및 4차산업을 준비하는 | | | | |

52766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299 (하대2동 105번지)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 입학상담 : 교학처 Tel.055-760-2222